(건축-011) 공장 옥탑 슬래브 천공작업 중 추락사고

공사명	○○면 ○○리 ○○공장 건설공사			
사고일시	2019년 10월 16일(수) 09:29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인천시 강회군	사고 종류	추락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사망 1명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 ()	, 해당없음(()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공장

○ 공사면적 : 연면적 199.57m²

○ 공사규모 : 지상 1층

2) 사고경위

- 10.16.(수) 21 : 29분경, 옥탑 지붕층 바닥 합성슬래브*를 파쇄하는 과정에 철골보와 데크 플레이트 등의 접합부가 벌어지면서 작업자가 13.6m(옥탑층 높이 12.2m+기계실 피트 깊이 1.4m) 아래로 추락
 - * 데크플레이트(바닥구조용 얇은 철판)위에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한 슬래브

3) 사고원인

○ 합성슬래브의 철근콘크리트 부위를 파쇄할 때 발생한 반복적인 진동으로 용접 접합부(철골보+데크플레이트)가 탈락되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콘크리트 파쇄물과 작업자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접합부(철골보+데크플레이트, 데크플레이크간)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- 해체공사 착수 전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제출·승인 받아야 한다.
- 구조물 해체 공사 전에 설계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, 공사비 내역서,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·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건물의 규모, 구조, 특징 등을 고려한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이 선정되도록 한다.



